

## 2) 향안·청금록 등재

신향세력들은 향안에 등재되고자 노력하였다. 향안은 해당지역의 전통 명문양반(구향)·전직 관리와 그 자제들의 명단인데, 향안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은 본가·처가·외가가 그 지방의 명문양반이어야 하고 가문에 허물이 없어야 했다. 또 향안에 오를 때에는 고을 양반들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향안의 등재자들은 향회를 통하여 고을의 여론을 결정하고, 수령의 자문과 좌수와 별감 등 향임을 추천하였으며, 일향의 약속인 향규를 만들어 향촌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향안의 작성은 기존 구향들의 향촌주도권이 존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이 중단되거나 등재문제로 대립이 있었다면 이는 기존의 사족 지배권이 동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순천지역의 경우는 이들 자료 일부가 순천향교에 보관되어 있는데, 향안의 경우는 1605년(선조 38)부터 1721년(경종 1)까지가 남아 있고, 향규의 경우는 1673년(현종 14)과 1742년(영조 18)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개가 남아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순천은 18세기 초반까지 향안 작성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후에도 향안이나 향규가 계속 후보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며, 이는 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신향세력의 도전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주목될 내용이다. 어쨌든 적어도 이 시기까지 순천지역에서는 조선 전기 이래의 양반사족의 지위가 유지되었음을 말해주는 일면으로 보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다만 순천지역의 경우는 1732년 이후 ‘향안’이 ‘향집강안(鄉執綱案)’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 이것은 순천지역의 사족들이 향정보다는 향교를 중심으로 더욱 조직화했음을 의미한다. ‘집강’은 향교를 운영하는 임원들을 총칭하는 말이며, 다음의 1732년 향집강안에서 보듯 그 중심세력들이 과거 순천지역을 주도했던 성씨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통정(雍正) 10년 임자 12월 초10일 향집강안(1732)

조태망(趙泰望)	장이당(張以堂)	허 열(許 蘖)	이방욱(李邦郁)
정휴경(鄭休慶)	조상정(趙相鼎)	정만령(鄭萬齡)	조운구(趙耘九)
박동도(朴東道)	조진망(趙震望)	정태경(鄭泰慶)	조도명(趙道命)
장이정(張以鼎)	이방영(李邦英)	조정명(趙鼎命)	조기석(趙祺錫)
조보명(趙普命)	정기정(鄭淇徵)	정 유(鄭 瑜)	조태명(趙泰命)

이 같은 점만을 보면 조선 후기에 와서도 순천지역 기존 사족세력의 존재는 매우 완강하게 존속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순천지역에서도 새롭게 성장한 신향세력이 향교 참여를 모색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향교의 『청금록(靑衿錄)』을 통하여 확인이 된다. 향교의 『청금록』은 향교에 출입하던 유생의 명단을 기록한 장부로서 향교에 출입하던 지방세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주지하듯이 향교의 학생은 교생(校生)이라 불렀으며 교생의 신분에 따라 양반은 액내교생(額內校生), 서얼이나 평민은 액외교생(額外校生)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그런데 인조대 이후 양반들이 액내교생을 외면하여 양반 대신 비양반이 액내교생이 되었다. 그리고 양반들은 액내교생 대신 청금유생(靑衿儒生) 또는 동재유생(東齋儒生)이라 이름한 청색 표지의 『청금록』에 등록되었고, 서얼과 평민들은 양반 대신 액내교생으로 입교하여 서재교생(西齋校生)이라 이름한 황색 표지의 교생안(校生案)에 등록되었다. 결국

『형금록』은 향교의 구향 학생의 명단이었던 것이다.

『형금록』의 입록방법은 각 향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대개는 유생들이 양반 문벌 자제를 천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또 양반문벌 자제들의 학식을 평가하고, 평가 시험에 합격한 자를 청금록에 입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신분동요가 일어나는 18세기 이후가 되면 향교의 유생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별도의 유생록이 작성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들 증가한 숫자나 새로운 형태의 유생 기록이 바로 신향세력의 진출과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이다.

다음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순천향교에 보존된 유생안은 모두 45종에 이르는데, 이들은 17세기 후반부터 작성되었으나 그 명칭에 차이가 있다. 즉, 1661년의 『유안(儒案)』, 1678년의 『형금록』, 1697년부터 보이는 『형금수행안(靑衿隨行案)』의 이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향안의 작성

순천향교 소장 유생안

연 대	유안명	유생수							
		청 금	액 내	상 액	중 액	하 액	동 몽	별 액	액 외
1661(현종 2)	유안(儒案)			37	45	55	58		
1664	별유안(別儒案)							57	
1667	별유안							37	
1678(숙종 4)	청금록(靑衿錄)	51							
1692	청금록	39							
1693	청금록	49							
1695	청금록	49							
1697	청금수행안(靑衿隨行案)	39							
1699	청금수행안	43							
1699	노유안	8	17						
1701	청금수행안	40							
1702	노유안(老儒案)	12	28						
1715	별유안							61	
1723(경종 3)	청금수행안	50							
1723	별안(別案)							20	
1726(영조 2)	청금록	89							
1726	청금수행안	38							
1726	청금부거안(靑衿赴學案)	46							
1735	청금수행안	45							
1735	청금부거안	106							
1742	청금수행안	31							
1750	청금수행안	42							
1757	청금부거안	62							
1761	청금수행안	81							
1774	유안		68						
1813(순조 13)	객사집사유생안(客舍執事儒生案)								40
1817	향교제복원납유생안(鄕校祭服願納儒生案)								5
1823	향교제복유생안(鄕校祭服儒生案)								25
1828	향교제복원납유생안								7
1840(현종 6)	본부객집유생안(本府客執儒案)								24
1840	향교제복유생안								14
1842	향교제복유생안								12
1849	향교서재유생안(鄕校西齋儒生案)		51						
1849	향교제복유생안								12
1849	본부객집유생안(本府客執儒生案)								31
1855(철종 6)	향교서재유생안		55						
1870(고종 7)	수영객집유생안(水營客執儒生案)								10
1872	객사유생안(客舍儒生案)								34
1873	원안유생안(元案儒生案)		36						
1873	향교제복유생안								17
1873	객사유생안								24
1873	수영객사유생안(水營客舍儒生案)								25
1876	제복유생안(祭服儒生案)								16
1881	객사유생안								27
1881	향교제복유생안								19

출전 : 향토문화총서-전남의 향교』 28집, 1987.

이 중단되면서 향집강안으로 바뀌는 현상과 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순천향교의 유생안에서 엿볼 수 있는 변화의 내용은 우선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변화는 향교 유생 숫자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661년 유안의 경우 액내유생을 상·중·하로 구분한 것도 문제이지만, 유생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거나 1735년의 경우처럼 106명까지 증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유안과 별도로 『별유안(別儒案)』(1664)이 등장하는 것이라든지, 『노유안(老儒案)』(1699, 1702)이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도 커

다란 변화의 반영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유생들은 액외의 별도유생이었으며, 1800년대에 이르면 아예 각종 명목의 유생안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객사집사유생안(客舍執事儒生案)』(1813), 『향교제복원납유생안(鄉校祭服願納儒生案)』(1817·1828), 『본부객집유안(本府客執儒案)』(1840), 『향교서재유생안(鄉校西齋儒生案)』(1849), 『수영객사유생안(水營客舍儒生案)』(1873) 등으로 세분되는 것은 모두가 액외의 교생으로서, 아예 원납(願納)을 밝히고 있는 것에서 보듯 향교의 재정확보와 관부의 필요에 따라 경제력을 가진 새로운 신분층을 동원한 예였던 것이다. 이러한 임시방편과 특수한 필요에 따라 향교의 유생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결국 『형금록』 작성 의미를 퇴색시켰다.

청금유생의 급격한 증가와 『형금록』 입록을 둘러싼 구향세력과 신향세력의 향전으로 말미암아 19세기에 이르면 각 향교에서는 더 이상 『형금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순천의 경우도 1800년대에 이르면 청금유생안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